

###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별 위험값

(제3-23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영업내용	위험값
투자중개업	①위탁매매	위탁매매 및 위탁매매관련 대고객 신용공여업무	12%
증권의 투자매매업	②자기매매(주식)	트레이딩 목적의 주식거래	18%
	③자기매매(채권)	트레이딩 목적의 채권거래	
	④자기매매(그 밖의 증권)	트레이딩 목적의 그 밖의 증권거래	
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	⑤장내파생상품	장내 파생금융거래	18%
	⑥장외파생상품	장외 파생금융거래	
투자은행업	⑦투자은행(인수)	증권의 인수·매출·주선, 기업공개, M&A의 중개·주선 등	18%
	⑧투자은행(ABS)	자산유동화, Project Financing 등	
	⑨투자은행(PI)	직접투자(Principal Investment)	
자산관리업	⑩자산관리(일임)	투자자문·일임업, 집합투자증권 판매,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영업	12%
	⑪자산관리(CMA)	종합자산관리계좌(CMA) 등	
종합금융업	⑫종합금융	종금업무	15%
단기금융업	⑬단기금융	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	18%
종합투자계좌업	⑭종합투자계좌	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	24%
	⑮그 밖의 경우	그 밖에 구분이 곤란한 영업, 제3-10조 제1항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영업	15%